

공주시 시민 ombudsman 모집 공고

우리 시에서는 「공주시 시민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·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민 ombudsman을 공개 모집합니다.

2021년 6월 8일

공 주 시 장

1. 위촉분야 및 인원

구분	위촉분야	위촉예정인원	위촉기간	비고
공개모집	시민 ombudsman	1명	2년 (1회 연임 가능)	

2. 주요업무

- 가. 시민의 신청에 따른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·처리
- 나. ombudsman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
- 다. 다수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, 조정, 시정권고, 의견표명 등 처리
- 라. 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및 공주시 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가 다수민원, 공공갈등 민원,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·처리
- 마.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, 조정 등 처리

3. 위촉 신분 및 근무 활동

- 가. 위촉신분 : 비상임 명예직(비공무원)으로서 ombudsman 활동 수행
- 나. 근무방법 : 주 3일 근무
- 다. 활동수당 : 5급(15호봉) 공무원 연봉의 50% 상당 지급(근무일수 산정 지급)

4. 전형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 : 자격요건 심사

※ 자격요건 적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심사 일정 개별통지

나. 2차 면접심사 : 적격요건 심사

※ 시민 읍부즈만으로서의 기본자세, 읍부즈만 및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, 전문성,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에 대한 면접

다. 의회 동의 대상자 발표 : 대상자 확정 후 개별통지

라. 의회 동의 : 공주시의회 동의 후 공주시 시민 읍부즈만 위촉

마. 최종 발표 :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(2021. 7월 예정)

5. 지원자격

가. 지원자격

- 1)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2)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3)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4)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5)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

※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는 「헌법재판소법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범위에관한규칙」 제2조 적용

*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

제2조(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) 「헌법재판소법」 제19조제4항제5호의 "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이 설치한 대학부설연구소로서 법률학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
2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
3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4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라 정부의 보호·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

나. 읍부즈만의 결격사유

- 1)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
- 2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) 「정당법」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
- 4)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

*** 지방공무원법**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겸직금지

- 1)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
- 2) 행정기관 등과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·직원

6. 지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1. 6. 23.(수) ~ 6. 25.(금) 09:00 ~ 18:00

나. 접수장소 :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(3층)

다. 접수방법 : 방문접수(대리접수 가능)

※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의 접수 불가

라. 제출서류

- 1) 지원신청서 1부
- 2)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
- 3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- 4)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
- 5) 비당원확인서 1부
- 6) 그 밖에 시민 읍부즈만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
7. 유의사항

- 가. 지원 희망자는 자격요건, 결격사유, 겸직금지 사항 등이 적합한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지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
- 나.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
- 다. 부정한 목적으로 지원서 등 선발전형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함
- 라.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마.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서류전형일 7일전 까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함
- 바.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공주시 시민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주시의 해석에 따름
- 사.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주시 감사정보담당관(041-840-2081)로 문의